

[‘집단중독’ 두성산업②]

“중처법 위헌 아냐” 위헌 신청 기각... 논란 사그라드나



▲창원지방법원이지에 기자 jyy@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됐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법으로 하나하나 규정할 수 없고,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라면 현행 법 규정만으로도 이행해야 할 의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위헌 불씨가 꺼졌다고 보기는 이르다. 법원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엔 문제가 된 조항 외에도 위헌을 다룰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포진해 있어서다.

11월 1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11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 천 모 씨 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재판 당사자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내용을 판단해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은 법원이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위헌 판정대’ 오른 중처법… “의무 명확하지 않고 처벌 과도해”

두성산업에서는 지난해 2월 근로자 16명이 급성 간 질환에 걸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원인이었다. 조사 결과 두성산업은 독성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대표인 천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첫 사례다.

재판이 시작되자 천 씨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 씨 측은 문제를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은 제4조 1항 1호와 제6조 2항이다. 제4조 1항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한다. 그 의무 중 1호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조치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 씨 측은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경영책임자라면 중처법 의무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아냐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판사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개념만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해당 법문을 구성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통해 법문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의 설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칭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해 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위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개선·유지하는 일련의 관리 또는 경영체계를 마련해 따르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강 판사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기업 내의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각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별 특성, 작업의 내용, 산업기술의 발전 상황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 개별 기업들의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의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수범자는 불특정의 일반인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라며 “이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안전과 보건 관련 전문가나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처벌 수위가 과도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기본권 제한 방법이 적정한지, 피해가 최소화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평등원칙은 다른 형벌규정의 형량과 비교해 정당하고 균형 있는 형사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비교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책임을 더 무겁게 규정돼 있어 부당하다는 게 천 씨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처벌 대상은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중대재해’에 한정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의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첫 위헌제청은 기각 중처법 위헌 논란 사그라들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1호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가장 위헌 소지가 높은 규정 중 하나다. 1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시행령 규정만 9개로 구성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이데일리가 올해 1월 법무법인 8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6곳이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바 있다.

법 제정 당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동법률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규제의 광범위성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고 향후 해석론과 위험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4조 1항 1호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행위를 추상적·개방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규범에 대한 준수가능성이 저하되고 그 규정과 인식가능성 사이의 간격이 매우 크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헌 의견은 울산지검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에서도 나왔다. 노정환 울산지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시행령에서조차 이 법령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이번 기각 결정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다.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측의 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도 법률 해석만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세부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쉽지 않은데도 법원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법률을 통해 처벌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의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험 논란이 일단락 됐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권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며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 법은 위험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나 충분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

싼 소모적인 위험 시비는 중단돼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의 취지를 준수해서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착시키고 현장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험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이번 법원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중에서도 두 가지 조항에 대한 판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 법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 여럿 있다.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험 시비가 다시 제기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판사들의 법리 해석은 다른 법원의 판단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민감하거나 개인 소신의 영향이 큰 사건은 특히 그럴 수 있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다시 제기될 경우 이번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고 두성산업의 재판에 전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모호성 등 현실적으로 사업장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노법

이지에 기자 jyjy@elabor.co.kr

